

## 서울교육대학교 - 국사편찬위원회 초·중등 교원 역사 교육을 위한 협약서

서울교육대학교와 국사편찬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확인하고 각자의 책임을 인식하여, 상호 호혜와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협력할 것을 합의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서울교육대학교와 국사편찬위원회는 공교육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양 기관 간 상호 협력을 모색하고, 초·중등 교원 대상의 체계적인 역사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.

**제2조(협력내용)** 서울교육대학교와 국사편찬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 단, 제반 업무협력을 위해 책임자를 지정하고, 사안별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.

1. 초·중등 교원 대상 역사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공동개발과 상호 협력
2. 양 기관이 각각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육 분야 사업의 상호 협력
3. 양 기관의 교육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

**제3조(비밀내용)** 본 양해각서에 의하여 교환되는 각종 정보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호간의 공동 사업추진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누출 및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계약 종료 이후에도 같다.

**제4조(협약의 해지)** 협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상호간에 발생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상대방은 협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.

**제5조(기타)** 본 양해각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.

**제6조(발효일 및 유효기간 등)**

1. 본 약정은 양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 쌍방이 서명한 날부터 발효되고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.
2.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약정의 변경 또는 폐기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2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3. 본 약정의 증명을 위해 약정서를 2부 작성,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3년 6월 13일

서울교육대학교 총장

신 향 균

신향균

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

이 태 진

이태진